

부산 해운대자이2차, 사직롯데캐슬 더클래식, 명륜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인터넷·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전화문의 ☎ 1600-1004)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약접수는 인터넷(PC,모바일)으로만 가능하며, 서류제출(등기)을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14(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조건 등(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재개발 매입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4)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분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분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가능**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서류제출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시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아목 및 제54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한국감정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또한 계약후 분양전환개시전 까지 입주하지 않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지위는 상실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에 한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역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대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 계약시 공가에 대한 사전 내부관람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체결한 본인의 주택에 대해서만 내부관람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견본주택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팸플릿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토지 이용계획도,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은 인터넷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동호개방불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 가격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의사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단 지 명	위 치	호 수
해운대자이2차 (우동6구역 재개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10 ·총 8개동 813호 중 임대 1개동(108동)	70호
사직롯데캐슬 더클래식 (사직1구역 재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46번길 1 ·총 8개동 1,064호 중 임대 1개동(108동)	84호
명륜2차 아이파크 (명륜2구역 재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73-6 ·총 23개동 2,058호 중 임대 1개동(205동)	176호

2. 공급대상

지구 (블록)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m ²)				임대 운영 호수	공가 세대	잔 여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 (75)	최고 층수	최초 입주 년월
		공급면적			계약면적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공용							
해운대자이 2차	37 (108동)	37.9376	16.7242	34.6465	89.3083	70	26	0	50	10	'18.07
사직롯데캐슬 더클래식	39 (108동)	39.9930	18.1877	23.6195	81.8002	84	6	0	20	22	'17.08
명륜2차아이파크	34 (205동)	34.5789	20.7983	21.3534	76.7306	176	37	0	70	23	'16.06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있음.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단위 : 원)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해운대자이 2차	37	30,107,000	6,000,000	24,107,000	384,110	(+)55,000,000	85,107,000	154,940
						(-)19,000,000	11,107,000	431,610
사직롯데캐슬	39	22,298,000	4,200,000	18,098,000	359,410	(+)51,000,000	73,298,000	146,910
						(-)12,000,000	10,298,000	389,410
명륜2차	34	17,615,000	3,200,000	14,415,000	366,480	(+)52,000,000	69,615,000	149,810
						(-)8,000,000	9,615,000	386,480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항별·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계약순번 도래 시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동호 추첨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됨.**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를 적용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3%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재건축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 당 5,500만원)하며, 용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II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4)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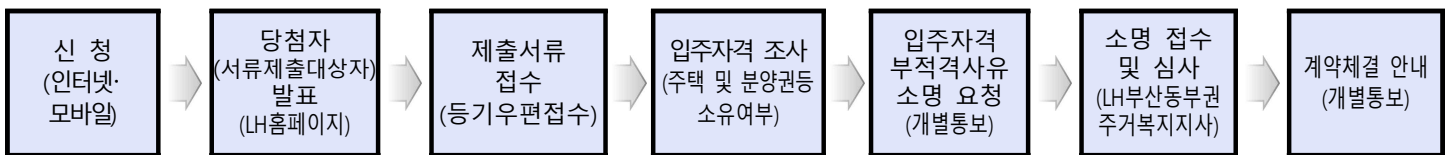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 **선정절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Ⅲ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1. 모집일정

신청 순위	청약신청 (인터넷/모바일)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일시	서류제출장소	계약체결 안내
무순위	2020.07.27(월) 10:00~ 2020.07.29(수) 16:00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2020.08.11(화) 16:00 이후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2020.08.17~08.21 등기우편 ※우체국소인일자가 2020.08.21(금)이내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부산동부권 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3층)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 [신청자격별 접수결과는 마감당일 20:00 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공지사항에 게시]

2. 신청방법 [인터넷 · 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청약신청(인터넷/모바일) 및 서류제출(등기)을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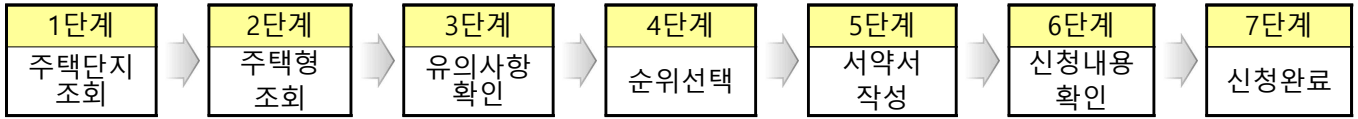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일 16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당첨/낙찰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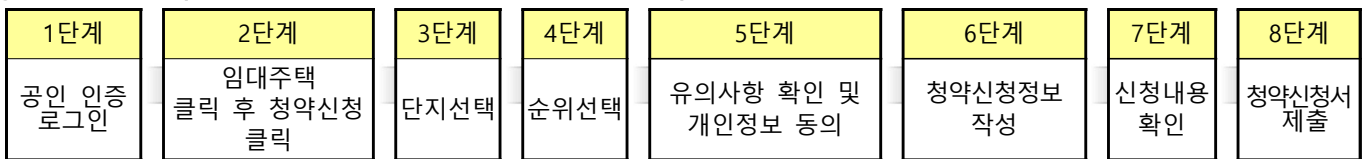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 16: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IV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대상자) 및 서류제출 등 안내

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서류제출 기한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대상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서류제출 장소	계약체결 안내
2020.08.11 (화) 16:00이후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2020.08.17~08.21 등기우편 ※등기우편 시 우체국소인일자가 2020.08.21(금)이내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우) 46273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 ※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2.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0.7.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20.08.17~2020.08.21]에 예비입주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낼시 봉투겉면에 “재개발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미도달, 제출누락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꼭 도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별도안내)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 사항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본인 준비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양식첨부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모두 포함)	
해당자 추가 사항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한국감정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 일반공급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 및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공급계약 취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당첨사실 조회방법

한국감정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재당첨 제한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5페이지 참조)임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 관리, 계약체결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2.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현행6.5%, 변경가능)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주소, 핸드폰번호)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 4층)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호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기존 입주자의 해약·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장소 안내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팸플릿을 별도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시 IV.서류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장소 (내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 서류제출 장소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817, BN(BIP)빌딩 3층(구서동 84-16)

■ 지하철1호선 구서역하차

2번 출구에서 약 100M (도보1분)

■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청약신청(인터넷/모바일) 및 서류제출(등기)을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불가로 대중교통이용 바랍니다.

임대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신청자명 :	핸드폰번호 :
단 지 명 :	인터넷접수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 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저축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